

# 2025년도 제24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4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2025년도 주요 강조사항

-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삭제

<b>기존</b>	⇒	<b>변경</b>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제(2025. 4. 29.)

- 2025년도 제3차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 결과 반영(2025. 5. 26. 실시)  
- 상담관련분야 내 교육학 분야 인정기준 명확화

구분	인정기준
<b>일반대학원</b>	학과명이 교육(학)일 경우 인정 가능(전공명 무관)
<b>교육대학원</b>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로 인정 가능할 경우 인정(학과명으로 인정 불가)

※ (예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의 경우

→ 학과명만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인정불가 하므로 '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에 따라 해당 전공에서 상담관련 교과목을 분야별 1개씩 4과목 이상 이수 또는 전공과목으로 채택(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분야'의 범위 명확화

- 학위명은 심사기준이 되지 않으며, 학과 또는 전공명으로도만 상담관련분야 해당 여부 판단

-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해석기준 명확화

- 분야별 1개씩 과목 4개를 전공으로 이수 또는 개설되어 있을 경우만 인정

- 본인의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 후(자가진단 또는 유선 문의) 필기와 면접 응시 권고(응시자격 미충족 시 필기와 면접 모두 합격 취소됨)

##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예정자 발표
제1차 (필기) 시험	(정기접수) 5일간 '25. 7. 21.(월) 09:00 ~ '25. 7. 25.(금) 18:00  (빈자리접수) 2일간 '25. 9. 4.(목) 09:00 ~ '25. 9. 5.(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7개 지역]	'25. 9. 13.(토)	'25. 10. 22.(수)
제2차 (면접) 시험	'25. 11. 3.(월) 09:00 ~ '25. 11. 7.(금) 18:00 (빈자리 접수 없음)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7개 지역]	'25. 11. 24.(월) ~ '25. 11. 29.(토) ※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25. 12. 24.(수)
응시 자격 서류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심사 대상자 : 2025년도 제24회 청소년상담사 제1차(필기)시험 합격예정자</li> <li>○ 서류제출·심사 기간 : '26. 3. 2.(월) 09:00 ~ 3. 13.(수) 18:00 [토·일 제외]</li> <li>※ 응시자격(학력, 경력 산정) 기준일 : '26. 3. 13.(수)</li> <li>○ 서류제출·심사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7개 기관</li> <li>○ 서류제출·심사 세부사항 : '4.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참조</li> <li>○ 최종합격자(서류심사 결과) 발표 : '26. 4. 1.(수)</li> </ul>				

※ 2차(면접) 시험 기간은 해당 기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선착순**에 따라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 미충족 시 1차와 2차 모두 불합격(무효) 처리됨

※ 1차(필기) 시험 합격예정자가 면접시험에 불합격 하였더라도,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1차시험이 최종 합격 처리됨(다음 회차에 한하여 필기 면제 가능)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첫 날 09:00부터 시작,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접수 기간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

##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가. 제1차(필기) 시험 과목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구 분	시 험 과 목	
	구 분	과 목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필수(3과목)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선택(2과목)	○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수(4과목)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선택(2과목)	○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수(5과목)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선택(1과목)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시험과목 중 법령과목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 청소년 관련 법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그 밖의 법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임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나. 제2차(면접) 시험 항목

면접시험의 평가 항목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 다. 시험방법

구 분			시 험 방 법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제1차 (필기)	1교시(필수)	객관식(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총 75문항)]
		2교시(선택)	객관식(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총 50문항)]
	제2차(면접)		면접시험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제1차 (필기)	1교시(필수)	객관식(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총 100문항)]
		2교시(선택)	객관식(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총 50문항)]
	제2차(면접)		면접시험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제1차 (필기)	1교시(필수)	객관식(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총 100문항)]
		2교시 (필수 및 선택)	객관식(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총 50문항)]
	제2차(면접)		면접시험

## 라. 시험시간

구 분	제1차(필기) 시험				제2차(면접) 시험
	교 시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1교시 (필수)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09:00까지	09:30~10:45 (75분)	1조당 10~20분 내외
	2교시 (선택)	○ 비행상담·성상담·약물 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11:30까지	11:40~12:30 (50분)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1교시 (필수)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09:00까지	09:30~11:10 (100분)	
	2교시 (선택)	○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 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11:30까지	11:40~12:30 (50분)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1교시 (필수)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09:00까지	09:30~11:10 (100분)	
	2교시 (필수 및 선택)	○ 학습이론(필수) ○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 활동론 중 1과목(선택)	11:30까지	11:40~12:30 (50분)	

## 4. 응시자격

### 가. 응시자격 기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별표 3]

※ 서류 제출 관련 세부 내용은 2025년도 제24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참조

구 분	자 격 요 건
1급 청소년 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원에서 <b>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b> 또는 그 밖에 <b>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b> 상담 관련 분야(이하 “<b>상담관련분야</b>”라 한다)의 <b>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li> <li>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li> <li>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li> <li>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li> </ol>
2급 청소년 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원에서 <b>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b> 또는 그 밖에 <b>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b> 상담 관련 분야(이하 “<b>상담관련분야</b>”라 한다)의 <b>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li> <li>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li> <li>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li> </ol>
3급 청소년 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b>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b> 또는 그 밖에 <b>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b> 상담 관련 분야(이하 “<b>상담관련분야</b>”라 한다)의 <b>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li> <li>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li> <li>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li> <li>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li> </ol>

-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 ([별첨]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참조)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2026. 3. 13.)을 기준으로 판단함
  - 상담관련 학과(전공)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와 해당 분야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전공)명에 **10개 학과(전공)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아동+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상담관련분야 인정 시 ‘학위’ 명이 아닌 **‘학과’ 또는 ‘전공’ 명으로 판단**

구분	인정기준
대학의 경우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로 명시
대학원의 경우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로 명시
	일반대학원 - 학과명이 교육(학)일 경우 인정 가능 (전공명 무관) 교육대학원 -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로 인정 가능할 경우 인정 (학과명으로 인정 불가)

※ (예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의 경우

→ **학과명만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인정불가 하므로, '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에 따라 해당 전공에서 상담관련 교과목을 분야별 1개씩 4과목 이상 이수 또는 전공과목으로 채택(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원본서류는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제출서류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b>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b> <b>&lt;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동일유사교과목 '25년 2월 기준) 참조&gt;</b>	<b>성적증명서(전공명시) 또는 교학처장(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재학 중 전공 학과커리큘럼</b>

- 석·박사 학위 수료의 경우, 학위 취득이 아니므로 응시자격 충족 불가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에 한함)
- 연계전공·부전공·융합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과목을 **해당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 개설만 되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및 주전공 과목과 합산 불가
  -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 예) 상담심리학 부전공인 경우, 상담심리학과에서 상담관련분야 4개 과목 이상을 해당전공으로 이수해야 인정(개설 인정 불가)

<동일(유사)교과목 인정 확인시 참고사항>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동일(유사)교과목”을 통해 기 인정된 동일(유사)교과목 확인 가능
  - 핵심키워드가 모두 일치해야하며 과목명에 “~론, ~학, ~연구, ~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생략)된 경우나 “의, 및, 과, I·II, 1·2” 등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추가 또는 생략) 경우에는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가능(이외의 생략 또는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동일(유사)교과목 심사 필요)
- 동일(유사) 교과목 추가 심사 신청 방법은 “학과장 직인” 날인된 동일(유사) 교과목 이수확인서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전자공문 제출(이외의 방법 불가)\_양식은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자료실 참조
  - 동일(유사) 교과목 심사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하되, 심사는 **연 2회 ('25. 7월말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8월 심사, '25. 12월말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26. 1월 심사) 실시** 후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2025년도 제24회 시험의 경우 **2026년 1월까지 심사가 완료된 과목에 한하여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 동일(유사)교과목으로 인정 가능**

**다.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직위 무관 / 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li> <li>▪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li> <li>▪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li> <li>▪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li> <li>▪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 예시내용 참조</li> </ul>
---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 법무부(보호관찰소, 구치소, 교도소 등), 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 등),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등),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센터 등), Wee프로젝트(스쿨, 클래스, 센터 등), 경찰청(SPO(학교전담경찰관)) 등

- 민간기관 :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또는 컨설턴트의 지위와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있는 일반 기관의 경우 해당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은 공단이 요청할 경우 제출**

※ **상담기관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 해당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복지관, 그룹홈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직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가능

**라.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시등급	상담유형	연간(1년기준) 실시경력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 단 상 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 리 검 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 단 상 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 리 검 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상담 실무경력은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취득**, 학위 취득 및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함

※ 예) 1급 수험자가 2020년 2월 석사학위 취득자라면, 학위 취득 이후부터 상담 실무경력 인정

○ 수험자가 1년(12개월, 365일)을 설정하며, 설정한 1년 안에 상담유형별 기준 횟수를 **모두 충족**할 경우 1년 상담실무경력 인정

- 서류심사 마감일 내로 1년 설정 후 특정 기간 내에 연간 기준 충족 시 실무경력 1년 인정 가능

※ 예) 2급 수험자가 '24년 4월 1일 ~ '25년 3월 31일까지 1년 설정(서류심사 마감일 : '26. 3. 13.) 후 '24년 10월까지 모든 유형별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1년 인정 가능 단, '24년 11월부터 2번째 년도 설정 불가('25년 4월부터 12개월 설정 가능)

- 1년 설정 시 서류심사 마감일을 초과하여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연간 기준 충족 시 실무경력 1년 인정 가능

※ 예) '25년 4월 1일 ~ '26년 3월 31일(서류심사 마감일 : '26. 3. 13.)까지 1년 설정 후 서류심사 마감일 전까지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 내담자(상담대상자)는 모든 사람(청소년, 성인, 아동, 학부모 등)이 가능  
- 상담 유형별 인정 기준

구분	급수	인정기준
개인상담	1.2.3급	대면 개인상담 경력(전화 및 인터넷 상담 인정 불가)
집단상담	1.2급	비구조화, 구조화 상담을 지도자(리더,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 (리더, 코리더 포함하여 5명이상 참여)_참가 인정 불가
	3급	비구조화 및 구조화,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 등을 실시(리더,코리더) 또는 참가한 경력(리더 코리더 포함하여 5명이상 참여)
심리검사	1.2.3급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

※ 심리검사 인정 가능 리스트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음(동일한 검사임에도 실시기관 마다 검사명이 다를 수 있음)

- 상담 유형별 세부 기준

구분	급수	세부 기준
개인상담	1.2.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면 개인상담만 인정(화상 대면상담 인정 가능 기간('20.2 ~ '22. 4) 제외)</li> <li>■ 상세기록은 내담자 별로 한 페이지씩 작성</li> <li>※ 예) 2급 응시자가 설정한 1년 안에 내담자 2명을 대상으로 각각 25회씩(총 50회) 진행했을 경우, 2장 작성</li> <li>■ 개인상담기록과 개인상담 상세기록의 사례번호는 일치해야 하며, 개인상담기록에 제시된 사례 수와 상세기록지 수가 일치해야 함</li> </ul>

		<p>※예) ‘개인상담기록’ 표에 총 10사례 제시하였다면, ‘개인상담 상세기록은 총 10쪽 작성’(각 사례번호는 일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세기록지는 페이지별로 상담을 실시한 장소의 기관장 직인을 받아야 함</li> <li>수험자가 설정한 1년 안에 실시한 기관이 다수인 경우 합산 가능 (기관별 직인 필수)</li> <li>기관장 직인이 없을 경우, 상위기관의 직인으로 대체 가능</li> </ul> <p>※예) 경기도상담센터장 직인이 없을 경우, 경기도지사 직인 인정 가능</p>
집단상담	1,2,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성원 수는 5명(리더, 코리더 포함) 이상으로 구성</li> <li>상세기록은 내담집단 별로 한 페이지씩 작성</li> </ul> <p>※예) 2급 응시자가 설정한 1년 안에 내담집단 3개를 대상으로 각각 8시간씩(총 24시간) 진행했을 경우, 3장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험자가 설정한 1년 안에 실시한 기관이 다수인 경우 합산 가능 (기관별 직인 필수)</li> <li>기관장 직인이 없을 경우, 상위기관의 직인으로 대체 가능</li> </ul> <p>※예) 경기도상담센터장 직인이 없을 경우, 경기도지사 직인 인정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행방식, 내용에 대한 제한 없음</li> </ul>
	1.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구조화 및 구조화 상담을 지도자(리더 or 코리더)로서 <b>실시만 인정</b></li> </ul>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구조화 및 구조화 상담을 지도자(리더 or 코리더)로서 <b>실시 또는 구성원으로 참가 인정</b></li> </ul>
심리검사	1.2.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전국 표준화 검사 또는 투사검사만 인정</b></li> <li>상세기록은 사례(검사방법)별로 한 페이지씩 작성</li> </ul> <p>※예) 2급 응시자가 설정한 1년 안에 내담자 1명을 대상으로 10개 검사방법을 진행했다면, 각 검사방법 별로 한페이지 작성 (총 10사례 인정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검사를 묶어서 진행하여 한 사례로 인정도 가능</li> </ul> <p>※예) 검사방법 4개를 활용한 심리검사에 대하여, 상세기록지 1장에 작성할 경우, 1사례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8줄 이상 작성</li> <li>심리검사의 결과에 대한 표, 그래프 등은 첨부 필수 아님</li> </ul>

<온라인 대면(화상) 실무경력 한시적 인정 기준>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방역지침을 최초 발표한 해당월 ('20.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해당월('22.4월)까지 적용
- 연간(1년기준) 실무경력(개인 및 집단상담) 인정기준의 70%까지만 인정

상담유형	1급 및 2급	3급
개 인 상 담	35회까지 인정	14회까지 인정
집 단 상 담	17시간까지 인정	4시간까지 인정
심 리 검 사	인정불가	인정불가

- 화상으로 실시한 대면상담 실무경력만 인정(전화, 인터넷 상담 인정불가)
- 추가 세부사항은 「2025년도 제24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참조

## 5.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 1. 서류심사 일정 및 대상자

- 심사대상 : 2025년도 제24회 청소년상담사 제1차(필기) 시험 합격예정자
- 심사기간 : 2026. 3. 2.(월) 09:00 ~ 3. 13.(수) 18:00 [토·일, 제외]
  - 제1차(필기) 시험 합격예정자가 면접시험에 불합격 하였더라도 응시자격 증빙서류가 제출·승인되어야 제1차 필기시험이 최종 합격 처리됨(다음회차에 한하여 필기면제 가능)
  -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 및 제2차 면접시험 모두 불합격(무효) 처리됨
  -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출 서류 확인에서 승인 여부 확인 가능

### 2. 서류심사 기관 및 제출 방법

#### 가. 응시자격 서류제출·심사기관(담당자 연락처 최신화)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2137-0566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330-1801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580-2385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820-8697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62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580-9137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729-0713

- ※ 위의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관에서만 심사 실시하며, 이외의 기관에서는 심사하지 않음(제출 착오로 인해 서류심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
- ※ 공단 본부(울산)는 응시자격 서류제출·심사기관이 아님을 유의
- ※ 응시자격 서류는 위 기관 중 본인이 제1차(필기) 시험에 응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행기관에 제출 권고

## 나. 제출방법 : 방문제출, 등기우편, 온라인학력증명 중 택1

- 방문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등기우편 : 서류심사 마감일('26. 3. 1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 봉투에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증'이라고 반드시 표기
- 온라인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력사항만 가능(일부학교에 한함)
  - ※ 온라인 학력서류 제출 가능 대학(원)은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자주묻는 질문&답변 게시물 참조
  - ※ 온라인 제출 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필요 없음

## 3.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학위)증명서 1부
  - ※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 성적증명서 또는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본인 재학기간 중(휴학기간도 포함) 전공 학과 커리큘럼확인서 제출
  - ※ 성적증명서 또는 커리큘럼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교과목이 분야 별로 1개씩 전공으로 4과목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상담 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1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별첨] 2025년도 제24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참고
  - ※ 응시자격 기준일 :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2026. 3. 13.)**

## 6. 결격사유 [청소년기본법 제22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음(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음)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삭제 <2025. 4. 29.>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7. 합격자 결정 기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 제1차(필기)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필기)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관에 응시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시험 불합격(무효) 처리함

### ○ 제2차(면접) 시험

- 면접위원의 평점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함.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함

## 8. 시험의 일부면제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 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 9.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제1차(필기) 시험 : 2025. 7. 21.(월) 09:00 ~ 7. 25.(금) 18:00  
- 빈자리 원서접수 : 2025. 9. 4.(목) 09:00 ~ 9. 5.(금) 18:00
- 제2차(면접) 시험 : 2025. 11. 3.(월) 09:00 ~ 11. 7.(금) 18:00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첫 날 09:00부터 시작,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불가
  -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에는 가상계좌 결제 불가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에서 원서접수 하여야 하며,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완료 여부 확인

### [ 응시자 공통사항 ]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 가입 후 접수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는 지사방문 및 사진 직원에게 제출

### 나. 접수방법

- Q-Net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 단체접수는 불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이상, 300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기존 큐

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마감시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필기) 시험 : 26,000원, 제2차(면접) 시험 : 16,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킷계좌이체, 간편결제)를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시험장소 :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제2차(면접)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직접 선택  
(제2차 시험 일정은 해당 기간 내에서 조정·단축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마. 시행기관(필기, 면접, 응시자격 서류심사)\_담당자 연락처 최신화**

기 관 명	담당부서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2137-0566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330-1801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580-2385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820-8697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62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580-9137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729-0713

※ 기관별 연락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수수료 환불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li> <li>·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li> <li>·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한 경우</li> <li>·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li> <li>·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li> <li>·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 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li> <li>·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 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li> </ul>
60%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또는 면접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li> </ul>
50%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li> </ul>
환불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 신청을 한 경우</li> <li>시험에 결시한 경우</li> <li>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li> </ul>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 및 서류 제출은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angdamsa](http://www.Q-Net.or.kr/site/sangdamsa)) “마이페이지” 에서만 가능(단, 빈자리(추가)접수 기간에는 접수 취소 및 환불 불가)

### 사. 시험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해야만 시험응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제출 시) 원서접수 기간 내 [큐넷 마이페이지-원서접수내역-응시 시험 편의제공사항 수정 및 확인]에서 편의제공 증빙서류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원서접수 기간 포함)에 편의제공 증빙서류를 응시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제출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므로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사항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 내용은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아.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자는 시험당일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자.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기간

- 제1차(필기) 시험 : 2025. 9. 13.(토) 14:00 ~ 9. 19.(금) 18:00 [7일간]

### 나. 의견제시 접수방법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

## 11. 합격(예정)자 발표

### 가. 합격예정자 발표일자

- 제1차(필기) 시험 : 2025. 10. 22.(수)
- 제2차(면접) 시험 : 2025. 12. 24.(수)

## 나. 최종합격자 발표일자

○ 발표일자 : 2026. 4. 1.(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승인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필기, 면접 합격자)로 처리됨

## 다. 발표방법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 1666-0100) [4일간, 유료]

## 12.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 등

### 가. 자격연수

○ 연수신청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연수대상 : 2025년도 제24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자격시험 합격 후 연수 미수료자

○ 신청방법 :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에서 자격연수 일정 및 장소 안내 예정

### 나. 자격증 교부대상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 후 자격연수 수료자

### 다. 자격증 교부기관 및 교부명의

○ 교부명의 : 여성가족부

○ 교부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라. 자격증 교부방법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격연수 종료 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www.youthcounselor.or.kr>)를 통해 공지 예정

### 13. 수험자 유의사항

####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포,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확인 서비스)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정부24·PASS앱, KB스 타뱅킹 국민지갑 등을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 면허 확인서비스, ③ 모바일 공무원증, ④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모바일 큐넷 전자 지갑 및 모바일 신분증앱에 발급된 것) 및 정부24, 카카오,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국가 기술자격 확인 서비스, 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포함)
- (실물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운전면허증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서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컬러)된 재학증명서 (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만 인정 ③ 국가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⑥ 서울시교육청 하이잡하이유 앱에 발급된 스마트학생증 (서울 소재 특성화고 한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 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및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최소 생년월일),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0점)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0점)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3]

8.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사유가 발견 될 때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9.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 등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 (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1.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4.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경영(기술)지도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 제2차(면접)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자는 일시·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유니폼)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
3. 수험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소속, 이름, 나이 등), 소속 등을 발설해서는 안되며, 부정행위(명함 배부 등)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즉시 중지하고 퇴실조치 합니다. (적발 시 무효처리(0점) 또는 부정행위 처리 될 수 있음)
4. 소지품 정리 시간 이후에는 시험 관련 자료·서적 등을 일체 열람할 수 없습니다.
5. 면접은 면접위원 3인, 수험자 2~3인 1조 면접으로 진행(15~20분 내외)되며, 면접순서는 수험자가 직접 추첨한 비번호 순서에 따른 조편성 순서로 진행됩니다.